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으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의 성실의무 강화(안 제2조)

- 1)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관련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 2)

-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별표 2 라. 2), 5), 차.).

-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
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별표 2 파. 5), 6), 7) 신설)
- 다.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9호, 제2
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23호의5, 제23호의6서식)
- 1) 해당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생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로 한다.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제23호의5 및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경우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 설계 또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패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사 개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1. 11. 19.>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에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	---------------------------------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문화재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 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 에는 추가하여 적 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책임감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착수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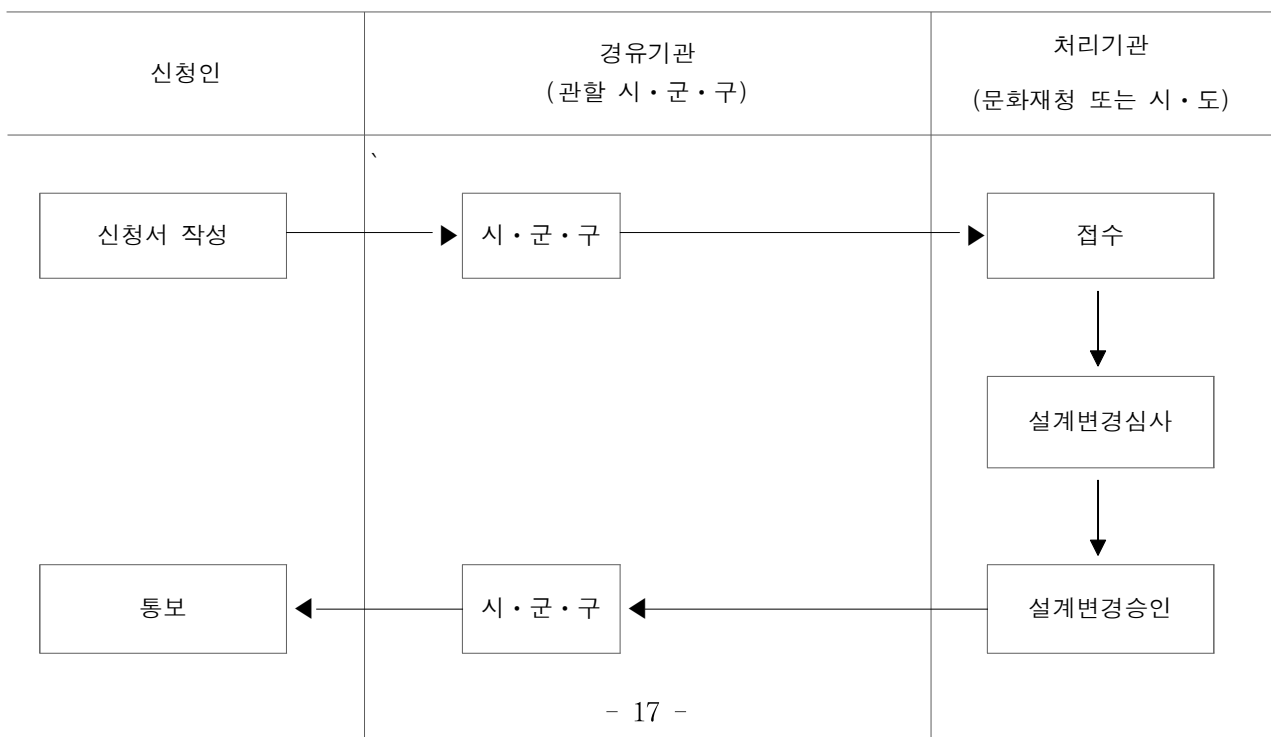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처리 절차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u>설계도서</u> 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성실의무) ----- ----- ----- ----- ----- ----- <u>설계도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u> ----- -----.